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조문이 이동되고 국가기관명·법규명 변경됨에 따른 규정 정비 및 도시광산화 사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형폐기물(소형 가전제품) 처리수수료를 면제
- 나.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현금 및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쓰레기·담배꽂초 무단투기 단속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단속 실적이 높은 단속 공무원에게 실적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이 단순 이동되어 관련 인용조문 변경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4조)
 -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제8조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6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제5조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7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9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제27조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9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제28조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9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제14조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9조의2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을 제8조제3항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를 제2조제7호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제14조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29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31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제68조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36조제1항)

나. 국가기관명·법규명 명칭 변경

- 국가기관명 변경 : 공업진흥청장이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안 제22조제1항)
- 법규명 명칭 변경 :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변경(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4호)

다. 도시광산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중 소형가전제품 처리수수료 면제(안 별표 4)

라.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안 제41조제1항)

마. 쓰레기·담배꽂초 무단투기 단속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안 제41조제3항)

바.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안 전반)

3. 개정근거

- 가. 「폐기물관리법」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2010추경예산 편성시 반영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09. 10.1 ~ 10. 21.(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 11. 5)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폐기물“이라 함은”을 “”폐기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활폐기물“이라 함은”을 “”생활폐기물“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의2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을 “”사업장폐기물“이란”으로,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로, “300킬로그램이상”을 “300킬로그램 이상”으로, “공사·작업등으로”를 “공사·작업 등으로”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란”으로,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폐기물”이라 함은”을 ““건설폐기물”이란”으로, “사업자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정폐기물”이라 함은”을 ““지정폐기물”이란”으로, “주변환경”을 “주변 환경”으로, “영 제3조에서”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대형폐기물”이라 함은”을 ““대형폐기물”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1에서”를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2항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를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로, “적정처리될”을 “적정하게 처리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장”을 “시장”으로, “변경여부”를 “변경 여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규칙 제3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를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규칙 제17조의 허가 기준 및 요건구비”를 “그 밖의 규칙 제28조의 허가 기준 및 요건 구비”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따라”로, “필한”을 “마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1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생활환경보전상”을 “생활환경 보전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항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를 “제9조의2에 따르지 않고”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한”을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건등”을 “여건 등”으로, “배출할수”를 “배출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영제2조제2항제2호”를 “영 제2조제7호”로,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1조를”을 “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3조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확보상태”를 “확보 상태”로, “처리기준”은 “처리 기준”으로, “적정여부”는 “적정 여부”로, “이행상태”는 “이행 상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조례에 따라”로, “(이하 종량제 라 한다)”를 “(이하“종량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별표2”를 “별표 2”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0조에 따라”로,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8조 별표2”를 “제18조 관련 별표 2”로, “일정율”을 “일정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5조 제1항 각호의”를 “제25조제1항 각 호의”로,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제18조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제24조 규정에 따라”를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분리배출한”을 “분리 배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인증기사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인증기 사용)”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배출신고 후에 신고자로부터 배출 취소(변경)신고”로, “3일 이내에”를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로 한다.

제30조 중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4조 제1항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최종처리자”를 “최종 처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폐기물량에 의거 안분된”을 “폐기물량에 따라 나눠 계산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납부기한내에”를 “납부기한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연4회”를 “연 4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68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라”로,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을 “서면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사유 없이”는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 제2항에 따른”으로, “의견진술기간”을 “의견진술 기간”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과태료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30일”을 “60일”로,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통보서에 의하여”를 “통보서에 따라”로 한다.

제40조 중 “재판에 의하여”를 “재판에 따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제”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제”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고자”를 “신고인”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으로, “내용등”을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절차등 포상금지급”을 “절차 등 포상금 지급”으로, “규칙”을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중 무단투기 단속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단속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을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으로,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규정 시행일(2010.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고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고
1	냉장고	업소용	17,000		27	침대	1인용침대틀	6,000	
2		500ℓ 이상	11,000		28		2인용침대틀	7,000	
3		300ℓ 이상	8,000		29	문갑		4,000	
4		300ℓ 미만	6,000		30	장식장	120cm 이상	6,000	
5	텔레비전	42인치이상	7,000		31		120cm 미만	4,000	
6		25인치이상	5,000		책상	양수	9,000		
7		25인치미만	3,000			32	편수	6,000	
8	에어컨	264㎡이상	11,000		34	피아노		30,000	
9		66㎡이상	7,000		35	캐비닛		6,000	
10		66㎡미만	4,000		36	화일캐비닛	4단이상	4,000	
11	세탁기	6kg이상	5,000		37		3단이하	3,000	
12		6kg미만	4,000		38	의자	3인용	7,000	
1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6,000		39		2인용	5,000	
14	공기청정기	264㎡이상	4,000		40		1인용	3,000	
15	가스히터		2,000		41	화장대		4,000	
16	자동판매기	대형	14,000		42	유모차(보행기)		3,000	
17		소형	6,000		43	신발장	120cm이상	4,000	
18	장롱	120cm 1쪽	18,000		44		120cm미만	3,000	
19		90cm 1쪽	13,000		45	오르간		6,000	
20		60cm 1쪽	10,000		46	쌀통		3,000	
21	서랍장	5단이상	6,000		47	난로	석유	3,000	
22		4단이하	3,000		48		전기	3,000	
23	침대	1인용(전체)	13,000		49	자전거	성인용(2발)	4,000	
24		2인용(전체)	18,000		50		아동용(2발)	4,000	
25		1인용메트리	7,000		51		아동용(3발)	3,000	
26		2인용메트리	11,000		52	문짝	1짝당	2,000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고	연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고
53	거울	120cm이상	3,000		82	블라인드	너비 2m 당	1,000	
54		120cm미만	2,000		83	빨래건조대		1,000	
55	밥상	5인용이상	3,000		84	수족관	1m이상	6,000	
56		4인용이하	2,000		85		1m미만	4,000	
57	비키니옷장		1,000		86	스커		3,000	
58	소파	3인용	8,000		87	시계	1m이상	3,000	
59		2인용	6,000		88	싱크대	1쪽당	4,000	
60		1인용	4,000		89	욕조		6,000	
61	식탁(테이블)	5인용이상	5,000		90	유아용	그네	1,000	
62		4인용이하	3,000		91		목마	1,000	
63	액자	120cm이상	2,000		92		자동차	2,000	
64		120cm미만	1,500		93	이불	1채당	2,000	
65	찬장	120cm이상	6,000		94	욕매트	2인용	7,000	
66		120cm미만	4,000		95		1인용	4,000	
67	책꽂이	3단이상	3,000		96	장판	1㎡ 당	1,000	
68		3단미만	2,000		97	재봉틀		3,000	
69	컴퓨터책상	너비120cm이상	4,000		98	진열대	너비 1m 당	3,000	
70		너비120cm미만	3,000		99	타이어	대형 (1,100mm이상)	6,000	
71	TV받침대		3,000	100	중형 (600mm이상)		3,000		
72	차탁자(교자상)		2,000	101	소형 (600mm미만)		2,000		
73	옷걸이(행거)	가로	2,000		102	타자기		2,000	
74		세로	2,000		103	탁구대		15,000	
75	가방	여행용 (바퀴부착)	3,000		104	화분	50cm이상	1,500	
76		일반용	2,000		105		50cm미만	1,000	
77	다리미판		1,000		106	고무통	대형(80cm x120cm이상)	3,000	
78	뚝자리	1㎡당	1,000		107		중형(60cm x100cm이상)	2,000	
79	병풍	2쪽당	1,000		108		소형(60cm x100cm미만)	1,000	
80	보일러	기름	4,000		109	물탱크	1t용량당	10,000	
81		가스	4,000		110	세단기		5,000	

연 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연 번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111	서랍	장롱·옷장용	2,000		117	파티션	1.5㎡ 당	3,000	
112		책상용	1,000		118	복사기		9,000	
113	세면대		3,000		119	환풍기		2,000	
114	수도호스	10m 당	1,000		120	카펫	1㎡당	2,000	
115	오락기	업소용	9,000		121	김치독	용기류제외	3,000	
116	창문		2,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p>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p>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3. "<u>사업장폐기물</u>"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u>대기환경보전법</u>」·「<u>수질환경보전법</u>」 또는 「<u>소음·진동규제법</u>」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u>300킬로그램</u>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4. "<u>사업장생활계폐기물</u>"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u>대기환경보전법</u>」·「<u>수질환경보전법</u>」 또는 「<u>소음·진동규제법</u>」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5. "<u>건설폐기물</u>"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u>사업장생활계폐기물</u>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3. "<u>사업장폐기물</u>"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u>대기환경보전법</u>」·「<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또는 「<u>소음·진동관리법</u>」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u>300킬로그램</u>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4. "<u>사업장생활계폐기물</u>"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u>대기환경보전법</u>」·「<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또는 「<u>소음·진동관리법</u>」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5. "<u>건설폐기물</u>"이란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u>사업장생활계폐기물</u>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6. "<u>지정폐기물</u>"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u>주변환경</u>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u>영 제3조에서</u>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7. "<u>대형폐기물</u>"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p> <p>8. "<u>재활용가능품</u>"이라 함은 <u>별표1에서</u>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6. "<u>지정폐기물</u>"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u>주변 환경</u>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u>폐기물 관리법 시행령</u>」 제3조(이하 "<u>영</u>"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7. "<u>대형폐기물</u>"이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p> <p>8. "<u>재활용가능품</u>"이란 <u>별표 1에서</u>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u>제2항의</u> 규정에 의한 협의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u>법 제4조 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p>	<p>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u>제1항에</u> 따른 폐기물 관리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u>제2항에</u> 따른 협의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u>폐기물 관리법</u>」 제4조 제2항(이하 "<u>법</u>"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u>지체없이</u>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u>지체 없이</u>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u>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u>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u>법 제14조제1항에 따라</u>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u>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u>법 제4조 제1항에 의거</u>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u>적정처리될 수 있도록</u>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u>서울특별시</u>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u>변경여부</u>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p>	<p>제5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u>법 제4조 제1항에 따라</u>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u>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u>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u>시장</u>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u>변경 여부</u>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6조(구민의 책무) ① ~ ② (생략)</p> <p>③ 법 제7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u>당해</u> 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조(구민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8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u>해당</u> 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u>규칙 제3조</u>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구와 다른 자치구가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 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④ ~ ⑤ (생략)</p>	<p>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구와 다른 자치구가 제1항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 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u>시장</u>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 ~ 5. (생략)</p> <p>6. <u>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u> 대항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p> <p>7. <u>기타 규칙 제17조의 허가기준 및 요건</u> 구비 여부</p> <p>③ ~ ④항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시</u> 대항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p> <p>7. <u>그 밖에 규칙 제28조의 허가 기준 및 요건</u> 구비 여부</p> <p>③ ~ ④항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p> <p>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당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p> <p>② 건설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제1항</u>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과 같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하여 <u>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u>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거</u>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u>지체없이</u>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신고 및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p> <p>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당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미친 후 운반하여야 한다.</p> <p>② 건설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제1항에 따른</u>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과 같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하여 <u>규칙 제14조에 따른</u> 건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에 따라</u>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u>지체 없이</u>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신고 및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④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u>제2항의 규정</u>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⑤ <u>제4항 규정</u>에 의한 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p> <p>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u>생활환경보전상</u>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u>당해</u>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u>제1항 규정</u>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u>제16조의 규정</u>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u>각호의 기준</u>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p>④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u>제2항에 따른</u>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⑤ <u>제4항에 따른</u> 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p> <p>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u>생활환경 보전에</u>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u>해당</u>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u>제1항에 따라</u> 생활폐기물을 <u>제16조에 따른</u> 종량제 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u>그 밖의</u>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u>각 호의 기준</u>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 봉투(이하 "규격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3. 재활용가능품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p> <p>4. (생략)</p> <p>5.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 규격봉투인 피피(P·P)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였을 때에는 <u>지체없이</u>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6. 기타 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이나 지정된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p>③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1. 제16조에 따른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 봉투(이하 "규격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5. 제9조의2에 따르지 않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 규격봉투인 피피(P·P)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였을 때에는 <u>지체 없이</u>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6. <u>그 밖에</u> 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이나 지정된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p> <p>③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④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⑤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④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3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⑤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구청장은 영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p>
<p>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마포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마포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수수료 과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상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 및 방법·수수료 과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 상태 등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 지역은 제3조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p>	<p>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 지역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p>
<p>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능품·대형폐기물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p>	<p>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로 한다. 다만, 연탄재·재활용가능품·대형폐기물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p>
<p>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 라 한다)가격에 의한다.</p>	<p>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관급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 라 한다)가격에 따른다.</p>
<p>제21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양·용량·용도·주의사항</p>	<p>제21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양·용량·용도·주의사항 및</p>

현행	개정안
<p>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p> <p>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았을 때에는 <u>제20조의 규정</u>에 의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및 <u>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u>를 검수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2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p> <p>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았을 때에는 <u>제20조에 따라</u>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및 <u>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u>를 검수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p> <p>① 구청장 또는 동장 및 <u>제9조 제1항의 규정</u>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p> <p>② ~ ③항 (생략)</p>	<p>제23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p> <p>① 구청장 또는 동장 및 <u>제9조제1항에 따른</u> 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 하여야하며, 이 경우 규격봉투 판매인에게 <u>제18조 별표2</u>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 하여야하며, 이 경우 규격봉투 판매인에게 <u>제18조 관련 별표 2</u>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규격봉투 판매업자는 지역주민이 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u>별표3</u>” 과 같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u>제3항</u>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해당 규격봉투 판매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③ 규격봉투 판매업자는 지역주민이 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u>별표 3</u>”과 같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p> <p>④ 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u>제3항</u>에 따른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해당 규격봉투 판매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제25조(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p> <p>① 규격봉투 판매인이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u>각호</u>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규격봉투대금 <u>기한내</u> 납부 5. (생략) 6. <u>기타</u> 행정지시사항 이행 <p>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u>각호</u>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5조(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p> <p>① 규격봉투 판매인이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u>각 호</u>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규격봉투대금 <u>기한 내</u> 납부 5. (생략) 6. <u>그 밖의</u> 행정지시사항 이행 <p>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u>각 호</u>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6조(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p> <p>① 구청장은 <u>제25조 제1항 각호</u>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규격봉투 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u>지체없이</u>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u>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6조(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p> <p>① 구청장은 <u>제25조제1항 각 호</u>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규격봉투 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u>지체 없이</u>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u>제1항</u>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금액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가격으로 하되, 제24조 규정에 따라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p>	<p>제2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금액은 제18조에 따른 규격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4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p>
<p>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p>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p>	<p>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같음)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p>
<p>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 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하고 3일 이내에 구청장</p>	<p>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 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에 신고자로부터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하고</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에게 환불 요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 요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규격봉투 제작비 등의 부과·징수)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인계하는 규격봉투 제작비의 부과·징수금액은 실제제작비에 조달 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규격봉투 제작비 등의 부과·징수)	제9조 제1항 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인계하는 규격봉투 제작비의 부과·징수금액은 실제제작비에 조달 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p>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 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가 반입수수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p>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p>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 및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 수수료 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가 반입수수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p>	

현행	개정안
<p>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p> <p>2. (생략)</p> <p>3.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p>	<p>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p> <p>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p>
<p>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폐기물 수수료 등은 <u>당해</u>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p> <p>②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비는 <u>당해</u>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u>최종처리자</u>에게 납부한다.</p> <p>③ 구청장 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에는 <u>당해</u>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p>	<p>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폐기물 수수료 등은 <u>해당</u>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p> <p>②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비는 <u>해당</u>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u>최종 처리자</u>에게 납부한다.</p> <p>③ 구청장 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에는 <u>해당</u>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④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된 업체별 반입처리비용 및 폐기물유형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업체별 폐기물량에 의거 <u>안분된</u> 반입처리 비용으로 같음한다.</p> <p>⑤ ~ ⑥ (생략)</p> <p>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p> <p>① 규격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규격봉투 판매업주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u>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u> 대형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p> <p>②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p>	<p>④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된 업체별 반입처리비용 및 폐기물유형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업체별 폐기물량에 따라 나눠 <u>계산된</u> 반입처리 비용으로 같음한다.</p> <p>⑤ ~ ⑥ (현행과같음)</p> <p>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p> <p>① 규격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규격봉투 판매업주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u>제9조제1항에 따른</u> 대형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p> <p>②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제작비는 구청장이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④ 구청장은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이 통보될 때마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⑤ (생략)</p>	<p>③ 제30조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는 구청장이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④ 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이 통보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4조(가산금 등) ①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 하여 상반기(매년 1.1 ~ 매년 6.30) 기간 중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해당년도 1월1일 현재 일반 연체이자율을, 하반기(매년 7.1 ~ 매년 12.31)기간 중에는</p>	<p>제34조(가산금 등) ① 제3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 하여 상반기(매년 1.1 ~ 매년 6.30) 기간 중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해당년도 1월1일 현재 일반 연체이자율을, 하반기(매년 7.1 ~ 매년 12.31)기간 중에는</p>

현행	개정안
<p>해당년도 7월1일 현재 일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p> <p>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연4회 지급 한다.</p>	<p>해당년도 7월1일 현재 일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p> <p>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p>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분기별로 연 4회 지급 한다.</p>
<p>제36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 등)</p> <p>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p>제36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 등)</p> <p>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구청장이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u>당해</u>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u>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u></p> <p>③ ~ ④ (생략)</p>	<p>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u>해당</u>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u>단서 삭제</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7조(청문) ① 구청장은 <u>법 제63조 제4항의</u>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u>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u>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u>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u> <u>정당한 사유없이</u>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u>의견진술기간 및 장소</u></p>	<p>제37조(청문) ① 구청장은 <u>제36조에 따라</u>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u>서면으로</u>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u>해당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u> <u>정당한 사유없이</u>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u>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제36조제2항에 따른</u>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u>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u> 등을 기재하여 통지</p>

현행	개정안
<p>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 한다.</p>	<p>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 한다.</p>
<p>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p>	<p>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p>
<p>① 구청장의 <u>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u>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① 구청장의 <u>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u>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u>60일</u>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u> 구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u>통보서에 의하여</u>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u> 구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u>통보서에 따라</u>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의 <u>재판에 의하여</u>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있음한다.</p>	<p>제4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의 <u>재판에 따라</u>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있음한다.</p>
<p>제7장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제</p>	<p>제7장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제</p>
<p>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지급)</p>	<p>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지급)</p>
<p>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p>	<p>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p>

현행	개정안
<p>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u>신고자</u>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 <u>내용</u>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u>절차</u>등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u>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u>신고인</u>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 <u>내용</u>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u>절차</u>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u>이 조례 시행규칙</u>으로 정한다.</p> <p>③ <u>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중 무단투기 단속에 특별한 공이 있거나, 단속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p>